

부산대학교 「PNU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FAQ[1.22.]

Q1. 대학원생의 지원요건 중 학생이 현재 연구과제 참여 중인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1. 해당 학생이 신청하려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연구과제 **참여 중일지라도 인건비를 미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청불가**합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부족금”만큼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Q2. 학생의 지도교수님이 임용되지 얼마되지 않아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으나, 학생은 지도교수가 아닌 **타 연구과제에 참여 중**이고,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지도교수님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으시더라도** 신청하려는 대학원생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즉, 지도교수님이 아닌 타 교수님의 연구과제에 참여 중이고,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Q3. 현재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려 했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학위논문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3. 해당 학생이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개인 학위논문 연구만을** 수행 중인지 확인해주시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참여기간 또한 확인필요), 현재 학위과정(석/박/통합) 이수 기간 중 **과제 참여이력(인건비 지급이력)이 있는지** 확인 후 충족한다면 지원가능합니다.

Q4. 현재 의학계열 학과에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4. 아니요. **신청불가**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여부를 통해 전일제를 판단하므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5. 현재 연구책임자 계정과 기관계정에 모두 잔액이 있습니다. 혹시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은 어느 계정에서 지원금이 지출되는 건가요?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에서 지출이 되는 건 아닌가요?

A5.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 계좌로 지출이 되는 구조가 아닌, **기관계정을 “통해서”** 지출됩니다. 다시 말해, 기관계정에 있는 교수님의 인건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비**가 기관계정에 이미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해서” 지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6. 국가 R&D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신진교수로 임용되어 **교내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과제에 참여 중인 대학원생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A6. 기본적으로 R&D, 용역과제 등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관리 중인 연구과제에 한해 참여여부를 지원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해당 학생이 그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내 지원사업은 대부분 **대학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RISE 사업 내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산공과제)의 경우** 대학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과제 특성상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되며, 학생인건비 계상률에 포함되는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담기관(한국연구재단)의 권고사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부족분 산정 시 포함합니다.

Q7. 신청하려는 학생이 현재 **타대학 연구과제에만** 참여하고 교내에서는 참여 중인 연구과제가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A7. 타대학 연구과제에만 참여하고 있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가 있다면** 해당 부족분만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단 과제관리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타대학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Q8. **기초의학계열** 면허증 미소지자 대학생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도교수 및 단과대학 확인까지 필요한가요?

A8. 기초의학계열 전문 면허증 미소지자 파악 시 지도교수와 단과대학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담기관 측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항이오니, 선정자 확정 후 증빙요청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9. 현재 석사 수료후연구생입니다. 지도교수님의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받고있는 인건비는 없고, 교수님의 **지자체 용역 과제만 참여**하고 월 70만원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활동형으로 신청가능할까요?

A9. 아니요. 연구활동형으로 지원이 힘듭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며, 지원금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운영됩니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내용을 따르며, 해당 법령의 제40조 10항을 살펴봐주십시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합은 최소 석사 22만원, 박사 30만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자체 용역과제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지원이 힘듭니다.

Q10. 신청하려는 학생은 현재 석사과정으로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에만** 참여 중입니다. 대학회계 재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A10.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경우 대학회계로 운영 중임에도 과제 특성상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학생인건비 계상률에 포함되는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 기관(한국연구재단)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산정 시 포함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구활동”**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11. 이번 학기를 끝으로 26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학위논문형 지원요건이 맞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졸업월이어도 신청가능**할까요?

A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 내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요건 충족만 된다면 신청가능합니다.